

<p>(7) 본회의 의결</p> <p>10. 기타사항</p> <p>가.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함.</p> <p>나.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50부를 '95.11. 13.까지 제출하여야 함.</p> <p>다. 감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'95.1.1.~'95.10.31. 기준으로 작성</p> <p>※첨부: 1. 서류(자료) 제출요구목록 서식: 별첨1(수록생략) 2. 선서문(안): 별첨2(수록생략) 3. 검사결과의견서: 별첨3(수록생략)</p> <hr/> <p>5.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(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) (15時 47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운營委員會 金鍾來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鍾來議員 안녕하십니까? 運營委員會 所屬 國民會議 金鍾來議員입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地方自治法施行令이 95年 7月 1일자로 改正公布됨에 따라 關聯條項을 일부 整備하여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實效性 확보를 위해 證人出席 및 證言 등에 관한 同法施行令 規定上の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으로, 主要骨子는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時 出席要求를 받은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한 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 賦課 및 그 節次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.</p> <p>本條例案은 運營委員會의 本議員 外 1人이 書面으로 提出한 案을 第4次 運營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, 禹元植議員 外 1人の 同意로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 第9條第1項 중 “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한다”를 “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한다”라고 수정하여 運營委員會案으로 滿場一致로 채택하고 提案하</p>	<p>게 된 것입니다.</p> <p>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고,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異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하고</p> <p>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9 조(과태료부과) ①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6.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 (15時 50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內務委員會 崔光雄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</p>
--	---